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안성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요 약

본 우리나라는 전 세계 IT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IT 강국이지만 정보교육을 소홀이 다루고 있어 핵심 원천기술과 SW를 개발할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교육진흥법」의 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법에서 담아야할 내용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교육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책무,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의 정보교육 활성화 방안, 정보활용능력인증제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 결과는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보교육진흥법」 제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정보교육진흥법, 정보교육 활성화 방안, 정보교육 실태, IT 산업 실태

Necessity and Way to Legislate an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Promotion law for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Seong-Hun Ahn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BSTRACT

Korea is a powerful nation in field of IT that has a 30 percent of world market. However Because of the IT education have been treated unimportant, korea has a shortage problem of manpower that develop core technology and software.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rection of the enac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Promotion Law to improve an education system and to promote education for IT. Also, we propose detailed contents to include in this law - the duty of country for a comprehensive planning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the organization of committee to promote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a method to promote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in school and society, certification system of Information Technology using ability.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result of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enact an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Promotion Law that can improve an education system for IT.

Keywords: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Promotion Law,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IT education

---

논문투고: 2011-02-18
논문심사: 2011-03-07
심사완료: 2011-03-29

1. 정보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000년까지 IT 산업에서 연평균 11.9% 증가하는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여 현재는 전 세계 IT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IT 강국으로 발 돋음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IT 산업의 잠재력을 평가해 볼 때, 미래에도 우리나라가 IT 산업 강국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쉽게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한 이유의 첫 번째는 하드웨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IT 산업의 취약한 구조 때문이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IT 산업의 총 생산량은 251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의 90.5%인 227조원이 정보통신기기 생산에 의한 것이고 SW 생산은 9.5% 정도인 23조원에 그치고 있다.[9][13]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의 핵심원천 기술을 개발해 낼 수 있는 SW 분야의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산량 규모에 있어 현재 세계 4위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IT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외국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81년 0.95억 달러였던 기술무역 적자액이 2007년에는 29.2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10].

두 번째 이유는 효과적으로 IT 인프라는 훌륭하나 활용은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버드대학의 세계적인 석학인 데일 조겐슨 교수는 우리나라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는 ICT 강국이지만 실제 ICT 활용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 형태를 조사한 한국인터넷진흥원(2009)의 통계에 따르면 89.4%가 정보 획득, 88.4%가 여가활동, 87.0%가 의사소통 등으로 단순 활용도는 높은 반면, 인터넷 금융(36.9%), 전자정부서비스(13.1%) 등의 업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로 유지된다면 훌륭한 IT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 업무의 활용성을 높여 국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분야뿐만 아니라 교육분야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혜숙(2008)에 따르면 PISA 2006의 ICT 관련 조사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ICT 활용 비율은 99.58%로 세계에서 가장 높으나 과학 검사의 학생 성취도는 8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 학생들이 인터넷 과제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ICT 활용 비율에 비해 과학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는 OECD 평균 이상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ICT 활용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의 효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 IT 산업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만우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우리나라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최근의 국제정보화 지표를 살펴보면 주요 몇몇 지표에서는 하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네트워크 준비지수가 2007년 세계 9위에서 2010년 15위로, IT 경쟁력지수가 2007년 3위에서 2010년 15위로, 국가경쟁력지수의 기술준비도가 2007년 7위에서 2010년 15위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 간의 정보격차 수준과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도 심각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계층별 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일반국민을 100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은 19.7, 저소득층은 20.5, 농어민은 39.7 장・노년층은 34.1로 사회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계층별 정보 격차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7].

정보화의 역기능도 심각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자는 1,913,000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 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17], 이러한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은 연간 7조 7484억원에서 10조 11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6].

위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IT 강국의 면모를 이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IT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IT 인력을 육성하여 IT 핵심 원

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IT를 활용해 업무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초·중등교육은 물론 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정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규정하는 「정보교육진흥법」의 제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IT 산업 및 정보교육의 현 실태

2.1 국가경제, 국가경쟁력, IT 경쟁력과의 관계

IT 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세계경제포럼(WEF)이 2008년에 발표한 'ICT 경쟁력지수와 GDP'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상관계수가 0.85로 나타나고 있어 그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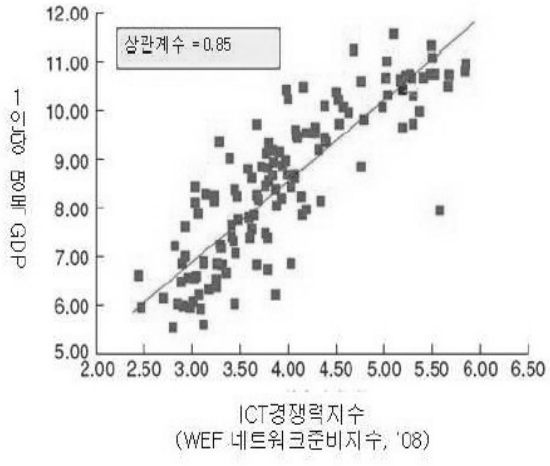

(그림 1) ICT 경쟁력지수와 GDP 간의 관계

또한 OECD(2009)가 발표한 부가가치기준 IT 산업 비중과 실질 GDP 성장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도 (그림 2)와 같이 상관계수가 0.79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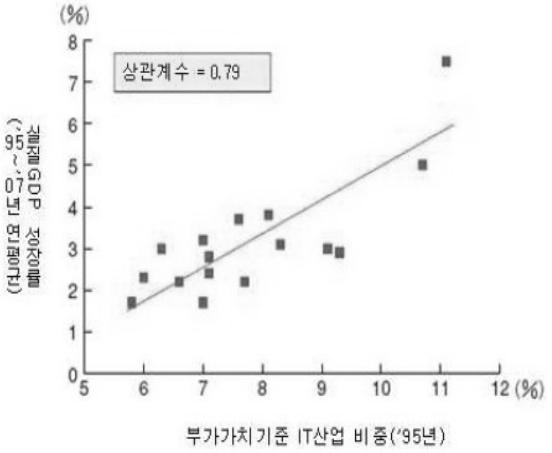

(그림 2) 부가가치 기준 IT산업 비중과 GDP 간의 관계

위와 같은 분석에 비추어 볼 때 IT 산업의 비중이나 경쟁력은 국가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IT 경쟁력과 국가경쟁력 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ICT 경쟁력지수와 국가경쟁력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상관관계가 0.88로 그 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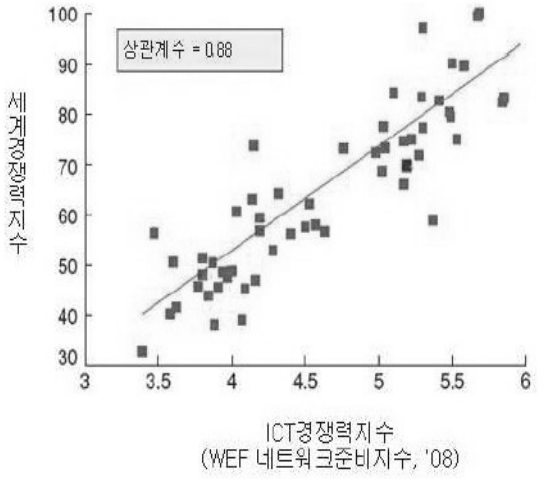

(그림 3) ICT경쟁력지수와 세계경쟁력지수 간의 관계

실제적으로도 GDP 상위 20개국의 ICT 경쟁력을 살펴보면 GDP와 ICT 경쟁력지수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CT 경쟁력지수가 1위인 덴마크는 1인당 GDP가 6위이고, ICT 경쟁력지수 2위인 스웨덴은 1인당 GDP가 7위, ICT 경쟁력지수 6위인 핀란드는 1인당 GDP가 8위, ICT 경쟁력지수 7위인 아이슬랜드는 1인당 GDP가 3위, ICT 경쟁력지수 8위인 노르웨이는 1인당 GDP가 2위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15].

2.2 IT 산업의 문제점

우리나라 경제에서 IT 산업은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IT 품목들은 핵심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 국산화율이 낮고, 중요 부품과 소재 및 운영 SW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벌어들인 외화의 상당 부분이 재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핵심원천기술을 주도할 SW 분야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1.8%에 불과하며, 국내 시장 또한 외국계기업이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9].

따라서 IT 제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핵심원천기술 개발이 중요하지만, IMD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은 (그림 4)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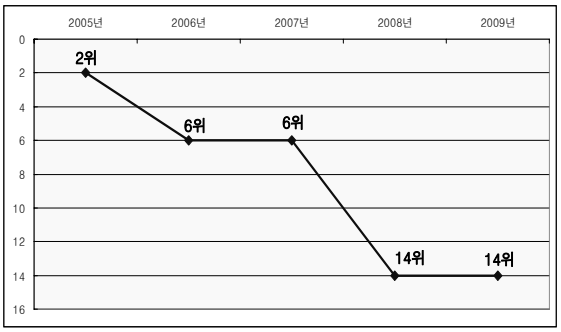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또한 무엇보다 우수한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만 공학분야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석·박사 인력 배출이 1만여 명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6] 그리고 이와 같은 고급 인력 감소의 문제는 산업 현장의 생산성 및 기술개발과 즉각적으로 연관되어지고 있다. 실제 국내 SW 개발 업체가 자체 기술을 개발할 때 겪는 애로점으로 '개발 인력 확보 곤란(5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13].

2.3 정보교육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교육 실태는 학교와 사회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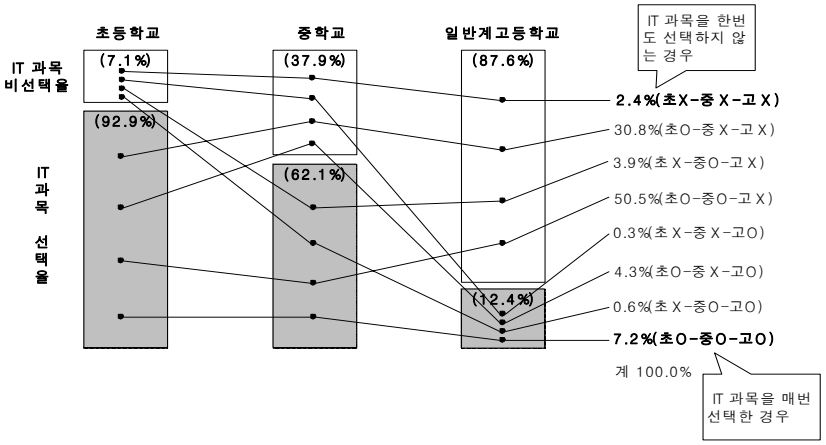

(그림 5) 고등학교 졸업까지 IT 과목 이수율 추정

※ 출처 : 2009년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서상기 의원) 분석 결과

든 부분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먼저 유아교육에서의 실태를 살펴보면, 3~9세 아동의 인터넷 이용률은 85.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20] 유치원에서 컴퓨터 활용 수업의 비율은 63.1%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자유놀이가 26.9%, 교수활동 51.5%, 컴퓨터 전담교육 18.3%로 정보교육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초·중등학교교육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정보 관련 과목의 선택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정보 과목 이수율로 추정해 볼 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각 학교급별로 정보과목을 매번 선택하는 학생은 7.2%에 불과하고, 한 번도 선택하지 않는 학생도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9 개정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2001년에는 전체 중학교의 59%가 정보교과 시수를 더 축소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1] 정보교육이 더욱 더 소홀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학교육에서는 초·중등학교에서의 정보교육 부실이 그대로 이어져 정보통신계열의 대학에서는 다른 계열과는 반대로 졸업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6)에 따르면 2002년 대비 2008년 정보통신계열 대학 졸업생은 학사가 12.9%, 석사가 29.3%, 박사가 15.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생교육에서의 정보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2010년에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정보교육을 받은 학습자 수는 44만 명으로 25세 이상 전체 성인 3,152만 명의 1.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1]

소외계층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1999년 이래 11동안 정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이 20%, 장·노년층이 4%, 결혼이민자가 7% 정도로 그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7].

3. 정보교육 관련 법체계 분석

3.1 정보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대한민국헌법」제31조 제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정보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⑥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명시에 따라 하위 법률로써 국민들의 교육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교육기본법」을 통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민들의 교육 권리와 교육에 대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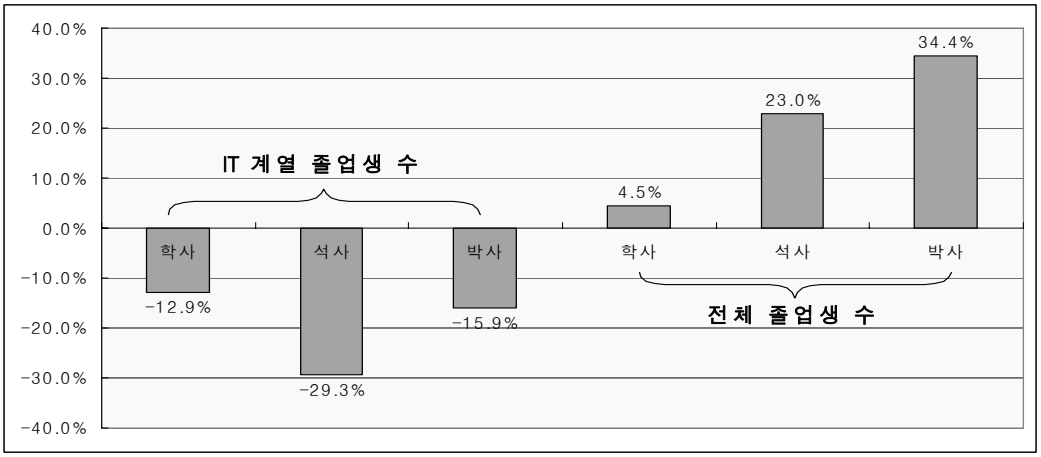

(그림 6) 2002년 대비 2008년 대학 졸업생 증감율(IT 계열과 전체 비교)[11][14]

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가지고 있고(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제4조).

따라서 정보교육에 관하여 국민들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기를 원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3.2 정보교육에 대한 법 체계의 불합리성

정보교육에 관련된 법령들의 체계를 분석해 보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에서와 같이「대한민국헌법」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대한민국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교육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보화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 지원, 교육정보산업을 육성 등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표 1>「교육기본법」에서의 정보교육 관련 내용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교육기본법」의 취지를 각 교육대상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을 각각 살펴보면 정보교육에 대해서는「평생교육법」에서만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법들에서는 정보교육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표 2>「평생교육법」에서의 정보교육 관련 내용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정보화 진흥은 논리적 하위 실행 법률인「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는 제대로 승계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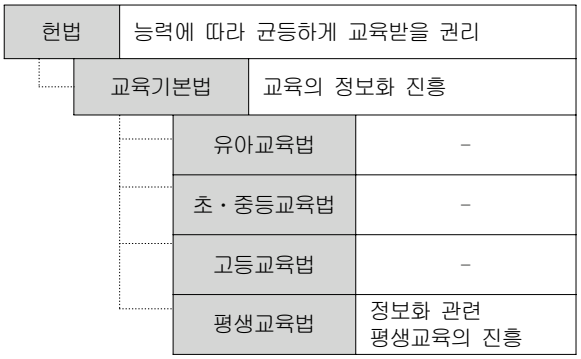

(그림 7) 법령별 정보교육 관련 내용

3.3 정보교육에 대한 법 체계 합리화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정보교육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교육기본법」의 취지를 따르고 있는「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정보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표 3>에서와 같이 관련 내용의 교육을 진흥시킬 수 있는 별도의 진흥법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각 법령별로 교육대상과 주최에 맞게 정보교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하므로 각 법령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하나의 법령 속에 모든 대상과 주최에 관련된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법령 마련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교육내용에서도 진흥법 제정을 통해「교육기본법」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

<표 3> 교육 관련 진흥법 제정 현황

법명	법의 목적
영재교육 진흥법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 실시
과학교육 진흥법	국민의 과학지식·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
환경교육 진흥법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도서(도서)·벽지(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4. 정보교육진흥법의 입법 방향

4.1 정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인 계획 수립을 강제하는 법 조문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

<정보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보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1. 정보교육의 목표와 방향
2.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정보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정보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등

② 시·도교육감은 정보교육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학교정보교육계획을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정보교육계획을 3년마다 수립

4.2 정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시대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업무 추진에 전문성과 합리성의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과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 조문이 필요하다.

<정보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① 정보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1. 정보교육종합계획의 심의
2. 정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정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4.3 학교정보교육의 활성화

IT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우수한 IT 인력을 양성해 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정보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는 정보교육이 필수화되어 있지 않아 점점 더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 조문의 제정이 필요하다.

<학교정보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노력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정보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정보교과 개설 및 정보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정보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사항
5. 그 밖에 학교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및 정보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 가능

4.4 사회정보교육의 진흥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활용 능력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는 정보교육이 필수화되어 있지 않아 점점 더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 조문의 제정이 필요하다.

<사회정보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정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정보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지역주민센터 등에서의 정보교육
3. 정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정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정보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정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5 정보활용능력인증제

학교와 사회에서 정보교육을 활성화하여 미래사회에서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정보활용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영어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평가·인증제들을 고려해 볼 때 정보활용능력인증제를 시행하면 학교나 사회에서의 정보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회정보교육의 진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평가하여 급수를 부여하는 정보활용능력인증제를 실시

5. 결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 IT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IT 강국이지만 대부분이 특정 분야의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고 핵심 원천기술의 보유율이 낮아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항상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과 SW의 개발에 역점을 두는 IT 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보교육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교육은 유아교육에서 평생교육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유아교육에서는 정보교육이 아주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에서는 선택이나 학교장 재량 정도로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의 소홀한 정보교육의 결과는 고등교육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대학에서 IT 관련 학과의 석·박사 인력 배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교육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학교와 사회에서의 체계적인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IT 핵심 원천기술과 SW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교육진흥법」의 제정은 「헌법」에서 정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정보화 진흥”에서 「정보교육진흥법」제정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교육진흥법」이 담아야할 내용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교육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책무, 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의 정보교육 활성화 방안, 정보활용능력인증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침체되어 있는 정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보교육진흥법」제정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2] 김성태(2010). 스마트 코리아를 향한 스마트워크 국가전략. 스마트워크 국가전략 세미나.

[3] 김혜숙 외(2007). 성과측정중심의 교육정책 평가. 아시아교육연구 Vol.8 No.2.

[4] 박선영(2003). 유아교육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에 대한 실태 분석.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09). 2009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6] 전재식 외(2009).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ww.kisdi.re.kr

[8] 지식경제부(2010).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 지식경제부

[9]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9). 2008 과학기술기획 현황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cesi.kedi.re.kr

[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9). 2009년도 영국 정부 정책 보고서 분석을 통한 교육정보화 정책의 시사점. 2009 KERIS 이슈리포트 RM 2009-25.

[13]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www.gokea.org

[14]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7). 2007 방송통신부문 인력동향 보고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5]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국가 미래준비지수의 개발 및 국제비교. IT & Future Strategy 제3호.

[16]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인터넷 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한국정보화진흥원

[17]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18]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주요국의 인터넷 중독 해소 정책 및 시사점. CIO Report vol. 23. 한국정보화진흥원

[19]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IT와 성장', IT를 통한 국가 재건전략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IT정책 연구시리즈 제10-09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0). 2009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NIA Ⅶ-RER-09142. 한국정보화진흥원

저 자 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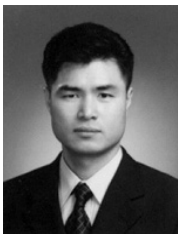

안 성 훈

1990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육학학사

1997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육학 석사

2001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육학 박사

2004~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2011. 4~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원격교육, WBI

E-Mail: sernself@hanmail.net